# 대전둔산1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세대 입주자 자격완화 모집

- ※ 금번 공급하는 그린리모델링 주택은 ① A형, ② B형, ③ C형(세대통합)이며, 각 유형별 기본 입주자격은 동일하나 배점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 '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12.1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득<mark>위화(150%)로</mark> 입주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다만,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한니다.
- 금번 공급하는 리모델링 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건축물에 친환경 자재 시공, 에너지절감공사(고성능 단열·창호·설비)를 통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신발장 등 수납가구

으로 설계

부족 등

# 변경 평면(26㎡)



- 신발장 반침장 공부방 책장 등 수납 강화
- 욕실 확대, 주방 비(bar) • 냉장고 전기쿡탑 제공

# 좁은 회장실 좁은 주방 신발장 등 수납가구 부족 등

#### ② (B형 리모델링)



- 신발장 변취장 등 수난 강화 욕실/문 확대 단차 제거
- 주거익자 편의시설 설치
- 냉장고 전기쿡탑 제공
- ③ (C형 세대통합리모델링) 연접한 소형평형(26m²) 2세대를 통합하여, 52m²평형으로 수선 공사한 주택

# 기존 평면(26m²) + 1010 침실 1 발코니 · 세대병합구간(조적) 세대 경계벽 일부(1.4m)를 비내력벽(조적)

# 세대통합 평면(52㎡)



- 3LDK. 주방 공간 확장. 거실 확장
- 욕실 확대 및 샤워부스 설치
- 침실붙박이장. 거실장 등 수납 강화
- ※ 위 리모델링주택 평면도는 예시이며, 세부구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11. 그린리모델링 영구임대주택 26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0.41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m²)			금회 모	.집호수	구조 및	입주	
유형	형별	형별 세대수		주거공용	합계	당첨자	예비자	난방	예정일	
A형	26형	10	26.37	13.56	39.93	10	40			
B형	26형	10	26.37	12.90	39.27	10	40	중앙 난방	개별 안내	
C형 (세대통합)	52형	6	52.74	27.12	79.86	6	35			

\* 당첨자수 및 예비자수는 공급 물량 변동.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A형	2,500,000	500,000	2,000,000	49,760	5,787,000	1,157,000	4,630,000	79,980
B형	2,500,000	500,000	2,000,000	49,760	5,787,000	1,157,000	4,630,000	79,980
C형 (세대통합)	5,000,000	1,000,000	4,000,000	99,520	11,574,000	2,314,000	9,260,000	159,960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소득 150% 이하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자산 기준등을 갖춘 자

####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2, 1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 성년자

신청자는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b>주택</b> 또는 <b>분양권등</b>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 세브기주

	·기군								
=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b>주택 특별법 시행규</b>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득 150% 이하인 사람			
		2. 월평균 :	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월평균 :	소득						
=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1인	1,322,574원이하	1,851,603원이하	2,645,147원이하				
		2인	2,189,905원이하	3,065,866원이하	4,379,809원이하				
		3인	2,813,449원이하	3,938,828원이하	5,626,897원이하	8,440,346원 이하			
		4인	3,113,171원이하	4,358,439원이하	6,226,342원이하	9,339,513원 이하			
		5인	3,469,177원이하	4,856,848원이하	6,938,354원이하	10,407,531원 이하			
		6인	3,797,042원이하	5,315,858원이하	7,594,083원이하	11,391,125원 이하			
		7인	4,124,906원이하	5,774,868원이하		12,374,718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급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한산한 급액임							
영구 임대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	성원 전원이 보유하.	고 있는 모든 총자선	난가액 합산기준 (2	0,0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자 <del>동</del> 차 가액	• 세대구성	성원 전원이 보유하	고 있는 개별 자동치	· 가액 (2,468)만원	이하			

#### ○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시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7	ŀ분	산정방법
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 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li>건축물가액이 경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토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하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li>「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총자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li> </ul>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4. 입주자 선정 방법(모든 배점항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 입주자 선정 방법

구 분	입주자 선정 방법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완화 모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거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경쟁 발생 시 아래 입주자선정 순서에 따름)

## ■ 배점기준표 및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 ① A형 리모델링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100	
1. 가구원수	2인 이상	15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본인을 포함한 입주대상자
(15점)	1인	13	· 구인증속에 중속된 시 중 순진을 포함한 由구네증시
	만25세 이하	25	
2 시커지어크	만26~29세이하	20	
2. 신청자연령 (25점)	만30~39세이하	15	
(23 🗇)	만40~49세이하	10	
	만50세이상	5	
3. 혼인 여부	미혼	20	
(20점)	기혼	10	
	5년 이상	10	
4. 해당지역	3~5년미만	8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기간 (10점)	1~3년미만	6	거주한 기간
(10 🖽)	1년미만	4	
5. 대상자선정 범이	해당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20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소재 대학생 주거지원
범위 (20점)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10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 대학생 주거지원
6. 기타 (10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sup>\*</sup>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대학생을 의미하며 <mark>대학원생은 해당없음</mark>)

##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rightarrow$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Rightarrow$	신청자 연령이 낮은 사람	$\rightarrow$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Rightarrow$	추첨

## ② B형 리모델링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9	
1. 가구원수(1점)	2인 이상	1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본인을 포함한 입주대상자
2. 신청자연령	만70세 이상	2	
(2점)	만65~70세미만	1	
2 #11517174	10년 이상	3	고그이 기조 조미드로샤 대저자여니에 게스킥여 기조회
3. 해당지역 거주기간(3점)	5~10년미만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 기가
기구기간(3百)	1~5년미만	1	1 기년
4.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입주자 신	선정순서			
배점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Rightarrow$	추첨

#### ③ C형 세대통합 리모델링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u></u> 총	계	100	
4 7 7 0 4	5인 이상	15	
1. 가구원수 (15점)	4인	13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본인을 포함한 입주대상자
(134)	3인	11	
	만60세 이상	5	
· U+I+I	만50~59세이하	10	
2. 신청자연령 (25점)	만40~49세이하	20	
(23 🗓)	만30~39세이하	25	
	만29세이하	15	
	3인 이상	20	
3. 미성년 자녀수 (20점)	2인	18	·만 19세미만, 태아포함
(20 🖽)	1인	16	
	6세이하	15	
4. 자녀의 나이 (15점)	7세~15세	13	·태아의 경우 6세이하 배점 적용
(13 1)	16세~19세	11	
	10년 이상	10	
5. 해당지역	5~10년미만	8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기간 (10점)	3~5년미만	6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1~3년미만	4	
 6. 대상자선정 범위	임대주택 관할구 거주	10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10점)	그 외 구 거주자	6	·공고일 기준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7. 기타 (5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5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중 미성년자인(만 19세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ဥ	<b> 주자 선정순서</b>				
배점 합산	$\Rightarrow$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Rightarrow$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Rightarrow$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Rightarrow$	추첨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구성원 중복 신청시 입주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일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2020 12 29 (ず)	※ 마지막날인 1.13(수) 18:00 <u>도착분</u> 까지만 유효	2021.04.23(금)17:00 [LH 홈페이지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ul> <li>계약체결: 2021.5.6(목)~2021.5.11(화)</li> <li>계약대상자 별도 개별안내</li> <li>계약장소: 대전둔산1관리소</li> <li>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간</li> <li>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시 별도계약안내</li> </ul>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u>현장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u>하며**,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현장신청 가능합니다.('20.12.29(화) 10:00~16: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마스크 미착용 및 안전 수칙 미준수시 현장신청 불가
- 현장 신청은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하며 서류미비시 현장신청 불가
- \* 금회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자**는 반드시 기간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서류제출일 마지막날인 <u>'21.01.13(수) 18:00</u> 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서류불량 미비, 제출기간 미준수, 미제출 등은 모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대전둔산1 관리소 청약접수 담당자 앞(우 : 35211)
-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는 사회보장정보원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정정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u>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10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u>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ні п

##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 12. 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그비서로

	구비서류	비고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별지4]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1)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2]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3]	<ul> <li>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별지6]	<ul> <li>대전둔산1 관리사무소에 비치</li> <li>(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li> <li>*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추가제출[별지5]</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u>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u>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u> .	1통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제출)	<ul>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li>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각1통				

#### ■ 배점 및 신청자격 관련 증명서

0 ±1	CU A L T I	ᆌᄎᆡᆿ	HL 7 +1
유형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재학여부	· 대학교 재학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해당대학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해당자)입양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기관
ᆀ드니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해당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중 가군 임대조건 적용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철거세입자 및 재해이재민의 경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통보 명단에 따름

## 7. 신청방법

ㅂ스

금회 모집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접수 가능

#### ■ 인터넷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신청

_	0													
ſ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ĺ	5단계		6단계		7단계	ĺ
	공인인증 로그인	$\Rightarrow$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Rightarrow$	단지 및 주택형 선택	$\Rightarrow$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Rightarrow$	청약신청 정보 및 기준정보 작성	$\Rightarrow$	신청내용 확인	$\Rightarrow$	청약신청서 제출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인 12월 24일 10시부터 12월 29일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해당자격,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반드시 '21.1.13(수)까지 등기우편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21.1.13(수) 등기우편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별도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없음)

#### ■ 현장방문 신청방법(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서류지참 필수)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방문객은 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기록 및 마스크착용, 체온측정을 하여야 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신청 장소	대전둔산1관리소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교통편	지하철(갈마역, 월평역) , 116번, 514번, 602번, 916번						
약 도	### 1 ###						

####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입주자 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1.04.23(금) 17:00이후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전산 랜덤 추첨)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1.04.23(금) 17:00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 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는 기간 중, 추가 수선 공사로 인하여 공급 세대가 증가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o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1.05.06.(목) ~ 05.11(화) 10:00~16:00]
- 계약장소 : 대전둔산1단지 관리소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ul> <li>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li> </ul>

-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득완화 (150%)로 입주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다만,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용도 및 소도차이로 결론 형상이 발생된 수 있으므로 하기 등 예반조치를 취하더야 한다.</li> </ul>
신청 자격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ul>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ul>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li> </ul>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예비입주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비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ul> <li>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으일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li> </ul>

104동, 108동 옥상층에 설치함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 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 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존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 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①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나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징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 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현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 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적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 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7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 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반  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ㅁ용기단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투	부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	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13. 문의처

문의처

- 대전둔산1단지 관리소 042-484-2592 (평일 09:00 ~ 18: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6.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 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단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영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동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u>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재 6</u> 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업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u>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 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u>입주자 만족도 조사</u>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u>임대료 결제(카드),</u>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제)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u>록번호),</u>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사면서비스를 통한 암.료 고 지서 및 각종 안만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 대료 부과내역 압주자격 감증 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 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고유식별정보</u>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 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u>입주자모집</u>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 개월 [입주대상재] 5년 [계약재]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 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1	i t	i.	i)	i	1 11	i	i)	i
1	į i	- 11	- 11	i	1 (1	i	- (1	i
	11	- 11	11	111 -1	1 11	101	- 11	10
1	i t	i.	i)	127	1 it	i Z	i)	i≚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앞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 앞면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7     0     0     1     0     1     -       1     2     3     4     5     6     7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신청자의 현재 거주지 도로명 주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7     0     0     1     0     1     -       1     2     3     4     5     6     7	홍길동 (정자서명)	홍길동 (정자서명)
배우자	김갑순	7     2     1     1     1     1     -       2     0     1     0     1     2     3	김갑순 <b>(정자서명)</b>	김갑순 <b>(정자서명)</b>
자	홍길순	0     1     1     1     1     1     1     -       2     1     0     0     0     1     2	홍길순 <b>(정자서명)</b>	홍길순 (정자서명)
		_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0 6 0 0 b 0 0 9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 지	3] 자산보유사실	확 인 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두	구택세대	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이러보조크	al 🗆		원	[임차인]			
	임차보증금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기타	ਦਿੱਲਦ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자산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예 🗆		원	[출자자]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부채	무네고 6 급	아니오 🗆		원	[임대인]			
1 20	장기카드 대출	예 🗆		원	[차주]			
	(카드론)     아니오 □       원     [차주]							
<ol> <li>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li> </ol>								
가. 위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별지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재임대공급)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임차인)	주소		

본인은 둔산1단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영구·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u>입주자모집 공고일</u>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대전둔산1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갱인 정보 상기 (1), (2)는 대전둔산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금융정보 등 금 정보 제공동의서 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상기 (1), (2)는 대전둔산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혼인 관계 □ |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월 녀 (1) 대표신청인 : (임) (인) (2) 예비배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별지 5-2]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전둔산1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u>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u>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 <b>우자</b> (필수기재)		-	(에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에시)부		-	(에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예비배우자 :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영구	임대주	택 공급	신청	서입	모델링	님 입	주자격	완화	] 접수번호 -		
신청 유형	단지명	대전둔산1			신청 주택형			가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2	주민등	록번호		-			
	주 소		1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대전광역시 전입일				년 월		
	□ 세대 월평 도시근로자 기	비하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2019년도 기준)>										
	– .							참고시	항		
소득		(1,322,574)원이하 (3,967,721)원 이하 (2,189,905)원이하 (6,569,714)원 이하									
조건		(2,189,905)원이 (2,813,449)원이		) <u>원 이하</u> * 가 <del>구원수는</del> 세대구성원 사위 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원			성원 전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3,113,171)원이	339,513)								
		(3,469,177)원이	(-)		)원 이하	————)* 철평균수극액은 세진?					
		(3,797,042)원0	,391,125	)원 이하	원 이하			12 17 600 696			
	7인가구	7인가구 (4,124,906)원이하 (12,374,718)원 이하									
해당	(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유족 포함)										
여부	□ 일본군위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A형 신청기	<b>T</b>									
	가구원수	신청자나이 혼인여부			대전시거주 대학생여부			부	기타		
	인	만세 미혼/		혼년월		월	여:	지역	□생계·의료수급 □아동복지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B형 신청자										
가점 항목	가구원수	· 수 신청자나이 I			H전시거주			장아	장애정도		
	인	인 만 세		년월		원	□장애정도가 심함				
	현──현──현──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 C형_세대통합 신청자										
	가구원수	신청자나이 ㅁ	성년자녀	자녀니	나이 대전	선시거취	주 거주?	4	자녀2명이상		
	인	만세	인	만	_세	년{	□대전 □그 외	시구   대저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 무주	<sup>독</sup> 택세대구성원		□ 총지	산가액 2	역 이전	하   <sub>□</sub> 7	사동차기	가액 2,468만원 이하		
신청자격 확인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병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